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17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2. 18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12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7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적정성
2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관리의 적정성
3.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, 성과평가 결과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6조의12(장애인권익옹호기관</u> <u>의 성과평가 기준 등) ① 보건</u> <u>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7 제</u> <u>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</u> <u>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</u> <u>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1.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</u> <u>의 적정성</u> 2.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</u> <u>관리의 적정성</u> 3. <u>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</u> <u>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</u> <u>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장</u> <u>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하여 포</u> <u>상할 수 있고, 성과평가 결과를</u> <u>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</u> <u>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01~2